주식회사 코람코가치투자양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6년 제4차 이사회 의사록

1. 일시 : 2026년 11월 17일(화) 오후 5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8층(삼성동, 아이콘삼성) 회의실
3. 참석자 :

이사총수	3명	출석이사수	3명

본 회의의 의장인 법인이사 ㈜코람코자산신탁의 직무수행자로 선정된 이상헌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정관과 상법에서 정한 본 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모두가 소집절차 생략에 동의하였고 출석한 이사의 수가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본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안건1 : 변경 임대차계약 및 제반계약 체결의 건

의장은 변경 임대차 계약 및 제반계약과 관련하여 별도 배부된 이사회 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1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안건2 : 주주간계약 체결의 건

의장은 당사 주주간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별도 배부된 이사회 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2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안건3 : 자산보관위탁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의장은 자산보관위탁계약 변경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별도 배부된 이사회 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3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안건4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의 건

의장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별도 배부된 이사회 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4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안건5 : 1차 신주발행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부동산 매입 및 운영을 위해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5호 안건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 아 래 -

1.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1) 제1종종류주식: 1,100,000주
   (2) 제2종종류주식: 10,000주
2. 1주의 액면가액: 금 5,000원
3. 1주의 발행가액
   (1) 제1종종류주식 1주당: 금200,000원
   (2) 제2종종류주식 1주당: 금200,000원
4. 신주 발행 총액
   (1) 액면총액
      1) 제1종종류주식: 금 5,500,000,000원
      2) 제2종종류주식: 금 50,000,000원
   (2) 발행총액
      1) 제1종종류주식: 금 220,000,000,000원
      2) 제2종종류주식: 금 2,000,000,000원
5. 신주식의 청약기일: 2026년 11월 23일
6. 신주식의 납입기일: 2026년 11월 24일
7. 주금납입은행: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주1)]
8. 신주발행 및 인수방법: 정관 제13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식을 배정하고 제3자가 전부 인수하기로 한다.
9. 제3자 배정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배정함.
   케이비증권 주식회사(한국리얼에셋 아레나스양지 1종종류주투자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제1종종류주식 585,000주)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제1종종류주식 465,000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1종종류주식 50,000주)
   ㈜고암 (제2종종류주식 5,000주)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제2종종류주식 5,000주)
10. 각 종류주식의 내용: 별지와 같음
11. 기타 신주식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법인이사에게 일임한다.

주1) 투자자로부터 우리은행 1005-404-965205계좌(주식회사 코람코가치투자양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자금

수령 후 주금납입은행에 이체 예정.

안건6 : 2차 신주발행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부동산 매입 및 운영을 위해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6호 안건을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 아 래 -

1.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1) 보통주식: 225,000주
   (2) 제2종종류주식: 150,000주
   (3) 제3종종류주식: 100,000주
2. 1주의 액면가액: 금 5,000원
3. 1주의 발행가액
   (1) 보통주식 1주당: 금200,000원
   (2) 제2종종류주식 1주당: 금200,000원
   (3) 제3종종류주식 1주당: 금200,000원
4. 신주 발행 총액
   (1) 액면총액
      1) 보통주식: 금 1,125,000,000원
      2) 제2종종류주식: 금 750,000,000원
      3) 제3종종류주식: 금 500,000,000원
   (2) 발행총액
      1) 보통주식: 금 45,000,000,000원
      2) 제2종종류주식: 금 30,000,000,000원
      3) 제3종종류주식: 금 20,000,000,000원
5. 신주식의 청약기일: 2026년 11월 25일
6. 신주식의 납입기일: 2026년 11월 26일
7. 주금납입은행: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주2)]
8. 신주발행 및 인수방법: 정관 제13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식을 배정하고 제3자가 전부 인수하기로 한다.
9. 제3자 배정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배정함.
   씨제이대한통운㈜ (보통주식 225,000주)
   씨제이대한통운㈜ (제2종종류주식 150,000주)
   씨제이대한통운㈜ (제3종종류주식 100,000주)

10. 각 종류주식의 내용: 별지와 같음

11. 기타 신주식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법인이사에게 일임한다.

주 2) 투자자로부터 우리은행 1005-404-965205 계좌(주식회사 코람코가치투자양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자금 수령 후 주금납입은행에 이체 예정.

안건7 : 차입계획 승인, 대출약정 및 제반계약 체결의 건

의장은 차입계획 승인, 대출약정 및 제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별도 배부된 이사회 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7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안건8 :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의장은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별도 배부된 이사회 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8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안건9 : 부동산관리 위탁계약 체결의 건

의장은 부동산관리 위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별도 배부된 이사회 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참석이사들의 심의를 구한 즉,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9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안건10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의장은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해 줄 것을 제의하자 출석 이사들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결의사항: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2026년 11월 17일(화) 오후 5시 30분

장소: ㈜코람코자산신탁 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아이콘 삼성)

안건: 1) 변경 임대차계약 및 제반계약 체결의 건(특별결의)
2) 주주간계약 체결의 건(특별결의)
3) 자산보관위탁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4)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의 건
5) 자본금 감소(감자) 계획 승인의 건(특별결의)
6) 차입계획 승인, 대출약정 및 제반계약 체결의 건(특별결의)

7)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특별결의)
8) 사업계획 확정의 건

의장은 이상으로 금일의 안건이 전부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종료시간 : 오후 5 시 20 분)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들이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2026년 11월 17일

주식회사 코람코가치투자양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법 인 이 사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인)
감 독 이 사	박 성 언	(인)
감 독 이 사	도 병 운	(인)

별지. 각 종류주식의 내용

제1종종류주식, 제2종종류주식 및 제3종종류주식의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하는 제1종종류주식은 의결권 있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제1종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제2종종류주식은 무의결권인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제2종종류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제3종종류주식은 무의결권인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제3종종류주식**")으로 한다.

④ 회사가 발행하는 제4종종류주식은 무의결권인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제4종종류주식**")으로 한다.

⑤ 회사는 최초 결산기부터 보유한 부동산(이하 "**보유자산**"이라 한다)의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이하 "**매각결산기**"라 한다)의 직전 결산기까지는 배당가능이익(어느 결산기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법정준비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거나 부투법 제2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초과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자본잉여금의 총 감소금액 및 감가상각누계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 단, 정관상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연도 중 신주가 발행된 경우 그 신주의 배당금 산정에 있어 "해당 결산기" 또는 "해당 결산기의 일수"는 "주금납입일의 익일부터 해당 결산기의 말일까지의 기간" 또는 "주금납입일의 익일부터 해당 결산기의 말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1. (1) 제1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연 7.0%의 비율[1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에 대한 비율로서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이하 "**제1종종류주식 우선배당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제1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이라 한다)을, (2)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에 연 7.0%의 비율[1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에 대한 비율로서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이하 "**제4종종류주식 우선배당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제4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한다. 제1종종류주식과 제4종종류주식은 본 호의 이익배당에 있어 서로 동순위로 하며, 배당가능한 금액이 제1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과 제4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우선배당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

1. 제1호에 따라 배당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

가액에 연 2.5%의 비율[1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에 대한 비율로서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이하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한다.

2.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동순위로 배당한다.

⑥ 최초 결산기부터 매각결산기의 직전 결산기까지는 어느 결산기에 직전 결산기까지 제1종종류주식, 제2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 중 어느 주식에 대하여 각 실제 지급된 배당금의 누적금액이 각 우선배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우선배당금의 누적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

1.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1) 직전 결산기까지의 제1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 누적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제1종종류주식 배당금 누적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제1종종류주식 누적우선배당금 부족액**"이라 한다)에 해당 결산기의 제1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을 합한 금액 및 (2) 직전 결산기까지의 제4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 누적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제4종종류주식 배당금 누적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제4종종류주식 누적우선배당금 부족액**"이라 한다)에 해당 결산기의 제4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을 합한 금액이 모두 배당될 때까지 우선하여 배당한다. 제1종종류주식과 제4종종류주식은 본 호에 따른 배당에 관하여 서로 동순위로 하며, 배당가능한 금액이 위 각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1) 및 (2)의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
2. 제1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직전 결산기까지의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 누적금액에서 실제 지급된 제2종종류주식 배당금 누적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제2종종류주식 누적우선배당금 부족액**"이라 한다)에 해당 결산기의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을 합한 금액이 모두 배당될 때까지 배당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동순위로 배당한다.

⑦ 회사는 매각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 다만, 매각결산기의 우선배당금은 매각결산기의 초일부터 보유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이루어진 날(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고, 이 경우 매각결산기의 우선배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결산기" 또는 "해당 결산기의 일수"는 "매각결산기의 초일부터 보유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날(이하

"**거래종결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또는 "매각결산기의 초일부터 거래종결일(당일 불포함)까지의 일수"로 한다.

1.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i) 제1종종류주식 누적우선배당금 부족액 및 해당 결산기의 제1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을 합한 금액 및 (ii) 제4종종류주식 누적우선배당금 부족액 및 해당 결산기의 제4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을 합한 금액이 모두 배당될 때까지 우선하여 배당한다. 제1종종류주식과 제4종종류주식은 본 호에 따른 배당에 관하여 서로 동순위로 하며, 배당가능한 금액이 위 (i) 및 (ii)의 각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i) 및 (ii)의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
2. 제1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종종류주식 누적우선배당금 부족액 및 해당 결산기의 제2종종류주식 우선배당금을 합한 금액이 모두 배당될 때까지 배당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남은 이익에서 보유자산 매각으로 인한 회계상 순처분이익(보유자산 매매대금에서 매각시점의 장부가액 및 매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고, 동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매각비용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매각기본수수료, 매각성과수수료 및 매각거래에 수반되는 자문료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함)을 차감한 금액(동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동순위로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4. 회계상 순처분이익을 한도(동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로 '감가상각비 초과배당 누적액, 주식발행비용 상계금액, 자본준비금 전입배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
   가.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이를 때까지 동순위로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배당 후, 본 호 본문과 같이 계산한 금액 중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이를 때까지 배당한다.
   다. 가목 내지 나목에 따른 배당 후, 본 호 본문과 같이 계산한 금액 중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이를 때까지 동순위로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제1종종류주식 및 제

4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직전 결산기까지 실제 지급된 배당금 및 본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배당받은 금원의 총액'이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거래종결일을 기준시점으로 한 내부수익률(IRR)이 10.0%가 되도록 하는 금액(이하 본 호에서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 종류주식의 각 "**목표배당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이 모두 배당될 때까지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동순위로 각 목표배당금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 "내부수익률(IRR)"이라 함은 해당 종류주주 또는 보통주주가 일정한 기준시점까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기타 형태로 배당 또는 분배되는 일체의 금액을 포함한 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이 해당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과 같아지도록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은 그 주금납입일에,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각 금원은 그 실제 지급일(다만, 매각결산기에 본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배당되는 금원은 거래종결일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에 각 현금흐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1년을 365일로 하여 연 복리로 계산한다. 내부수익률(IRR) 산정 시 주주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 기타 제세공과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사의 주식이 양도된 경우 해당 주식의 종전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 및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해당 주식의 최종 주주가 납입하거나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내부수익률(IRR)을 계산하고, 이하 같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해당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직전 결산기까지 실제 지급된 배당금 및 본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배당받은 금원의 총액'이 '해당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거래종결일을 기준시점으로 한 각 내부수익률(IRR)이 5.0%가 되도록 하는 금액(이하 본 호에서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각 "**목표배당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이 모두 배당될 때까지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동순위로 각 목표배당금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이하 "**목표배당금 분배 후 잔여이익**"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한다.

가.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목표배당금 분배 후 잔여이익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순위로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

나.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목표배당금 분배 후 잔여이익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순위로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

⑧ 매각결산기 이후의 결산기에는 새로운 우선배당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매각결산기에 제7항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배당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결산기에 제7항 각 호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미배당금액을 배당한다.

⑨ 청산 등의 사유로 이 회사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환금한 후 회사의 모든 확정채무를 변제하고 비용 등을 지급하며,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한 적립을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며, 이 경우 잔여재산은 수차로 나누어 분배될 수 있다.

1.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제7항 제1호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제7항 제1호 및 제8항에 따라 실제 배당되지 아니한 미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 각 미배당 금액이 모두 분배될 때까지 분배한다. 분배가능한 잔여재산이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의 미배당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종종류주식과 제4종종류주식의 각 미배당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한다.
2. 제1호에 따라 분배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제7항 제2호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금액 중 제7항 제2호 및 제8항에 따라 실제 배당되지 않은 미배당 금액이 있는 경우 위 미배당 금액이 모두 분배될 때까지 분배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이를 때까지 동순위로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제7항 제4호 및 제8항에 따라 제1종종류주식 또는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본 호에 따른 분배한도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액 총액에 이를 때까지 분배한다. 다만, 제7항 제4호 및 제8항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종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본 호에 따른 분배한도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분배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이를 때까지 동순위로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만, 제7항 제4호 및 제8항에 따라 제3종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본 호에 따른 분배한도로 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직전 결산기까지 실제 지급된 배당금(제7항 제5호 및 제8항에 따라 배당된 목표배당금을 포함함) 및 본 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분배받은 금원의 총액'이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일을 기준시점으로 한 내부수익률(IRR)이 10.0%가 되도록 하는 금액(이하 본 호에서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 종류주식의 각 "**확정 목표배당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이 모두 분배될 때까지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종류주식에 대하여 동순위로 분배한다. 분배가능한 잔여재산이 각 확정 목표배당금 부족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확정 목표배당금 부족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해당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직전 결산기까지 실제 지급된 배당금(제7항 제6호 및 제8항에 따라 배당된 목표배당금을 포함함) 및 본 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분배받은 금원의 총액'이 '해당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일을 기준시점으로 한 내부수익률(IRR)이 5.0%가 되도록 하는 금액(이하 본 호에서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각 "**확정 목표배당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이 모두 분배될 때까지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동순위로 분배한다. 분배가능한 잔여재산이 각 확정 목표배당금 부족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별 확정 목표배당금 부족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이하 "**분배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배한다.

   가. 제1종종류주식 및 제4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분배 후 잔여재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순위로 각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한다.

나. 제2종종류주식, 제3종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 후 잔여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순위로 각 발행가액 총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한다.

⑩ 본 조에 따라 각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배당 또는 분배되는 금액은 해당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 또는 분배한다.